

Question

산안법 제19조 제2항에서는 산안법 제31조에 의한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되어있으나 노사간 이견 지속으로 의결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일단 교육의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법정 교육시간에 충족하도록 교육을 진행하여도 되는지요. 또한 정기교육시간을 교대근무자들을 위해 시간대를 달리하여 하루에 2회씩 총 6일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근무시간에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근무 후에 교육을 받는 경우, 이수한 교육 시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시간외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도 함께 문의드립니다. [접수번호 : 10872146]

Answer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은 같은 법의 각 조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노·사 상호간의 견해차를 원만히 해소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여야 할 것이므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산업안전보건교육 등 같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반 의무사항이 면하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가 재해방지를 위해 사업주의 책임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이므로 근로자가 이러한 교육에 참가한 경우 근로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작업종료 후 기타 근무시간 이외에 교육을 실시한 경우가 근로기준법 제55조(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의 규정에 해당된다면 동 규정에 따라 소정의 임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Question

안전교육장으로 컨테이너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컨테이너 구매비용 전액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전액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인정받을 경우, 준공후에는 발주처에 인계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문의드립니다. [접수번호 : 10880804]

Answer

안전교육장 전용으로 사용하는 컨테이너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집행할 수 있으며 타용도로 사용은 불가합니다. 또한 준공후 동 컨테이너는 시공사에 귀속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입니다. 그런데 인력소개소에서 안전화를 가져오지 않는 사람은 현장을 소개시켜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안전보호구는 일을 시키는 사용자가 제공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낱품으로 일하는 우리에게 이런 부담을 부과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접수번호 : 10866614]


Answer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동조제3호)에 의하면 사업주는 물체의 낙하·충격, 물체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의 경우 안전화를 지급하고 근로자가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주장하신 바와 같이 안전화에 대한 지급 책임은 현장의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직업소개소에서 안전화를 가져오지 않은 구직자에게는 현장을 소개시켜 주지 않았다면 이는 사업주에게 부여된 안전화 등 보호구 지급 책임을 근로자에게 전가한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으나,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에서 사업주에게 보호구의 지급 책임을 부여한 것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채용한 이후 위험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의무를 부여한 것으로 해석되며, 채용 이전의 행위나 사실에까지 어떤 책임을 지우고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Question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 총공사 금액이 4천만원 이상에 해당하여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였는데, 경쟁입찰에 의하여 4천만원 이하로 낙찰된 경우에 계약상대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작성한 도급내역서 상에 안전관리비가 계상되어 있으면 반드시 이를 감액하고 도급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요?(계상된 안전관리비를 감하여도 계약금액은 변경 없음) [접수번호 : 10850007]

Answer

공사금액이 4천만원 미만일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의무적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공사는 아닙니다. 그러나 당해 공사 수행시 동법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업무는 이 행되어야 하므로 자율적으로 안전관련 비용을 공사금액으로 확보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공사내역서에 반영된 산업안전관리비 감액여부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공사계약관계법령 등을 참조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노동부(www.molab.go.kr) 전자민원창구 질의응답코너에서 발췌한 자료임.